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동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217
----------	-------

발의연월일 : 2022. 12. 28.

발의자 : 정동만 · 김도읍 · 김용판

김정재 · 박성민 · 안병길

유경준 · 이주환 · 이채익

전봉민 · 최형두 · 황보승희

의원(12인)

제안이유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목표로 국내외 기업들의 연구·개발과 서비스 실증 지원을 위해 유상운송 허가 등 다양한 특례가 주어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이하 “시범운행지구”)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시범운행지구는 관할 시·도지사의 신청을 전제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다수의 시·도에 걸친 구간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정이 어려워 장거리 화물운송 등 자율주행 기술 실증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운행지구를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써 다수의 시·도에 걸친 자율주행 유상 여객·화물운송 서비스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또한, 시범운행지구에서의 자율주행 유상 여객운송 특례 허가권한을 현행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로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주행 여객운송 서비스 운영·관리를 모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나 정상적인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로 명확화함(안 제2조).
-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 다.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한 유상운송 허가권자를 기존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로 변경함(안 제9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분 자율주행자동차: 지정된 조건에서 자율주행시스템으로 운행할 수 있으나 작동한계상황 등 필요한 경우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제7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 변경 또는 해제요청하려는 시범운행지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 · 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 ·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관할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직접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제1항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를 “시·도”로 한다.

제9조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유상운송 허가·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2.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
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
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 · 변경 또
는 해제요청하려는 시범운행지
구가 둘 이상의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
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에
걸쳐있을 경우 관할 시 · 도지사
가 공동으로 지정 · 변경 또는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
통부장관이 둘 이상의 시 · 도에
걸친 구역을 시범운행지구로 지
정하는 데 있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 · 도지
사와의 협의 및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직접 시범운행지구
를 지정할 수 있다.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 설>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 제1항 및
제3항-----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
----- 시 ·
도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이를 신청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 및 관리 등) ①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 · 광역시 · 특별자치시 ·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 · 도”라 한다)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 · 고시된 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생략)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활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불일 수 있다.

<신설>

제9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
-----. 이 경우 시범운행지구 관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유상운송 허가·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1. 제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한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친 시범운행지구를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2. 둘 이상의 시범운행지구에 걸친 구역을 대상으로 한 유상운송 허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유

<신설>

상운송 허가를 하려는 자는 교통안전 확보 및 운송질서 유지 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생 략)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군·군수는 제3항에 따른 한정운수면허를 발급하는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3항과 같음)

⑥ -----

-- 제5항-----

-----.